

국회에서 의결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장
(법무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858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나목 중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을 “미성년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다목 중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청소년”을 “미성년자”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사회적 관행을 확립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법적·사회적 나이 기준은 ‘만 나이’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적 특성이나 국민 편의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상 ‘연 나이’ 기준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함.

<법제처 제공>